KOSHA GUIDE

C - 63 - 2012

- (5)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운 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.
- (6) 가설전기는 장비, 기계·기구별로 최대 부하용량을 계산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산 정하여야 하며 분전반은 관계근로자 외 조작을 금지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.
- (7) 크레인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, 작업 시작 전에 권과방지장치, 브레 이크·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, 지붕, 바닥, 담 등의 강성, 안정성, 균열상태, 노후 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.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,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.
- (9) 지게차를 이용하여 장비 및 자재를 하역할 경우에는 KOSHA-GUIDE M-88-2011 (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에 따른다.
- (10) 그 밖의 가설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-8-2011(작업발판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)에 따른다.

5. C.I.P 흙막이공사 안전조치 사항

5.1 일반사항

- (1)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(매설물, 가공물, 도로구조물, 지반, 노면교통 등)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가) 흙막이공사를 위한 상세한 위치, 사용기계 및 공정, 매설물 처리방법 등